

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
운영 조례안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9월 26일

발 의 자 : 이인순, 양순임, 고영옥, 강수진,
김경이, 경수현, 김육영, 소형준,
이용진, 진선아, 권영애, 정윤주,
임현주, 이관우

1. 제안이유

학대·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센터 설치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센터의 기능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~제8조)
- 마. 비밀 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 (안 제9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동
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예산 범위 내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복지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2023. 10. 1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기가정”이란 가정 내 폭력·학대로 112신고 된 가구를 말한다.
2. “위기가정통합지원”이란 위기가정의 정서·법률·경제·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.
3. 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”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“성북구”라 한다)와 서울 성북·종암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·방임 등의 피해로 발견·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재발 방지 등 통합적 사례관리, 전문기관 연계, 복지서비스 제공,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, 종합적인 보호·

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민·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4조(센터의 설치 등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가정폭력·학대 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통합사례관리사, 상담사, 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(APO)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성북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 중 가정폭력 및 학대 등으로 112에 신고 접수된 가구로서 “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”에 동의한 대상자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
2.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
3. 가정폭력 및 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
4. 동주민센터 복지 서비스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
5. 지역 내 가정폭력 및 학대가정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한 교육·홍

보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민·관 공동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가정폭력·학대가구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성북구에 소재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·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제9조(비밀 준수 의무) 공동협력체계 구성원 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